

(비공식 번역)

투자위원회 고시
제 Por.6/2559 호

전자 투자촉진 시스템 절차

불기 2520 년(1977 년) 투자촉진법 제 11 조, 제 13 조, 제 17 조 및 제 22 조에 의거하여, 투자위원회의 권한을 부여받은 투자청은 2016 년 9 월 30 일 투자위원회 고시 「제 Por.5/2559 호 전자 투자촉진 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추가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전자 투자촉진 시스템 서비스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는 바이다.

1. 본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투자 촉진 신청서 및 온라인 투자 촉진 시스템의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절차 및 방법에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 투자청이 규정한 이전의 법, 규정, 고시문 및 기타 절차가 본 고시의 내용과 상충된다면 본 고시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3. 투자촉진 신청

3.1. 투자촉진을 신청하려는 자는 투자청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여 참고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서 초안을 작성 후 신청서 접수 전까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해당 시스템에서 신청서 제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투자청 사무실로 제출할 것인지 두 가지 제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3.1.1. 신청서를 투자청 사무실로 제출하고자 하는 신청자의 경우, 전자 시스템에서 신청서 제출을 확인하면, 신청 상태는 “신청서 제출 보류중(pending application)”으로 표시될 것이다. 신청자는 모두 작성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해야 하며, 투자청에서 3.3 항목에 따라 수락할 수 있도록 참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3.1.2.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을 확인 후에 신청현황은 “확인 중(pending verification)”으로 표시된다. 관리자(service provider)는 3.3 번에 따라 신청서를 수락할 것이다. 신청자는 모두 작성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뒤 인터뷰 당일 투자청에 참고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3.2. 신청자가 기재한 모든 정보가 맞다고 확인을 하면, 담당자(service provider)에게 접수가 되며,

모두 완성되었다 간주하여 관리자의 허가 없이 수정할 수 없다.

3.3. 관리자(service provider)는 신청서 접수 전에 전자 투자촉진 신청서에 작성해야 할 정보들을 모두 작성했는지 확인할 것이다. 관리자(service provider)는 신청서 접수에 대해 전자 시스템을 통해 통지하며, 기재한 정보가 미완성일 경우 같은 방법으로 신청서 수정을 요청할 것이다.

관리자가 신청서 접수를 당일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자 시스템은 다음 근무일에 자동으로 신청서 접수를 확인한다.

3.4. 신청자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인터뷰 날짜 공지를 받을 것이다.

3.5 투자청의 신청서 승인 및 승인 통지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이 사실을 전자 시스템으로 통지한다. 신청자는 투자청 사무실에서 승인 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 승인 통지를 우편으로 받아보기를 희망할 경우 투자청에 해당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4. 촉진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다. (전자 촉진 시스템을 통해 투자촉진을 신청한 프로젝트의 경우에 한함)

4.1 촉진 수락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1 개월 내 투자촉진 인증 수락 양식을 전자 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service provider)가 해당 수락 양식을 확인하면, 신청서 검토를 진행하여 검토 결과를 신청자에게 전자 시스템을 통해 통지할 것이다.

4.2. 촉진 수락의 연기

신청자가 투자촉진 인증 수락 양식을 4.1 번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촉진수락서 연장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리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검토 결과를 시스템으로 통지할 것이다. 신청자는 연장 승인 통지서를 투자청 사무실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우편으로 받아보기 희망할 경우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연장 신청을 최대 3 번까지 할 수 있으며, 신청 1 회당 연장 기간은 1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3. 투자촉진 인증서 발급

신청자는 투자촉진 인증 수락 양식 제출 후 6 개월 내 투자청에서 요청한 참고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는 투자촉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전자 시스템으로 통지할 것이다. 신청자는 투자촉진 증명서를 투자청 사무실에서 받아볼 수 있다.

4.4 투자촉진 인증서 발급의 연장

신청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촉진 증명서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리자는 신청을 검토하여 검토 결과에 대해 시스템으로 통지를 한다. 신청자는 투자청 사무실에서 연장 승인 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 우편으로 받아보기를 희망할 경우 연장 승인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최대 3 번까지 연장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1 회 당 연장 기간은 4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프로젝트 수정

신청자는 투자청에서 요구하는 참고 서류와 함께 프로젝트 수정 신청서를 전자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다. 관리자가 신청서를 받게 되면, 신청서를 검토하여 결과는 시스템으로 통지한다. 신청자는 투자청 사무실에서 승인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우편으로 받아보기를 희망할 경우 승인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 이와 같은 기준은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이며, 태국 투자청 청장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7. 본 고시문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태국 투자청 청장의 결정을 따른다.

이 고시문은 현재부터 유효하다..

고시일 2016 년 10 월 5 일

(Hirunya Suchinai)

투자청 청장